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3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박지혜 · 이훈기 · 조인철
안도걸 · 정혜경 · 윤준병
박지원 · 이상식 · 장종태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배달플랫폼사업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배달플랫폼사업자(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달상품 청약의 접수, 결제 및 배달용역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점업체(배달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입점업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비를 포함한다)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의4제1항”을 “제20조의6,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20조의6(배달플랫폼사업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배달플랫폼사업자(전자적 시스 템을 이용하여 배달상품 청약 의 접수, 결제 및 배달용역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 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는 입점업체(배 달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배달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그 입점업 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 비를 포함한다)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u> <u>②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 시하여야 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